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I): 조세제도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 경협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 교역에서 더 발전하여 위탁 가공 및 투자 협력 사업으로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즈음하여 본 자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불안정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수 제정되어 있는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사전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의 내용을 ①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② 노무 관리, ③ 경영 활동, ④ 토지 관리, ⑤ 금융(외환·보험), ⑥ 조세제도, ⑦ 분쟁처리 및 청산제도 등 크게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여섯번째인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

외에 투자하는 경우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지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

이다. 이러한 특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세제도 상의 특혜일 것이다.

조세규정, 세무 등록 및 제재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세 규정은 1992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에는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1993년 1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채택되었으며, 1994년 2월 정무원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을 승인하였다.

먼저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소득세·거래세·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그리고 조세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장려 부문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제8조).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특정 품목외에는 수출입 물자에 대해 무관세, 생산 부문에서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결산 이윤의 14%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9조).

한편,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인의 세무 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 기관에 세무등록신청서¹⁾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세금법 제2조, 세금법 시행규정 제5조).²⁾ 그리고 북한 내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재정 기관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한다(세금법 시

〈표 1〉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의 종류

내용	벌금
지정일 내에 세무 수송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소득세공제납부서·재정부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0 원까지의 벌금
세액을 적게 공제하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의 납부와 동시에 미납 세액의 2 배까지 벌금
탈세한 경우	탈세액의 납부와 동시에 탈세액의 4 배까지 벌금

자료: 세금법 시행규정 제74조, 제75조.

1) 세무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① 기업의 명칭과 주소, ② 기업 등록 날짜, 등록 번호, ③ 기업의 경영 방식과 업종, ④ 경영 기간, ⑤ 종업원 총수(그 가운데 외국인 수), ⑥ 부지 면적, ⑦ 거래 은행 명칭과 계좌 번호, ⑧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 부기 책임자의 이름.

2)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분리·해산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20일내에 해당 재정 기관에 세무 등록, 변경, 취소 수송을 해야 한다.

행규정 제4조). 단, 자국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 관련 협정이 북한의 세금법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세금법 제7조). 각종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세금법 제3조).

세금법에서는 세금과 납부와 관련하여 연체, 탈세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이 연체한 경우 납부 기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74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세금법 시행규정 제75조, 제77조).

〈표 2〉 기업소득세율

구분	세율
자유경제무역역지대 안	결산 이윤의 14%
자유경제무역역지대 밖	결산 이윤의 25%
장려 부문	결산 이윤의 10%
외국 기업의 기타 소득	자유경제무역역지대 안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역지대 밖은 소득액의 20%

자료: 세금법 시행규정 제17조.

조세의 종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금법」에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세에는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재산세·상속세·거래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자동차이용세가 있다.

기업소득세

기업 소득은 크게 기업 활동을 통한 소득과 기타 소득³⁾으로 구분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13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거래세를 공제한 결산 이윤에 부과하며(세금법 시행규정 제15조), 북한 영

3) 기타 소득에는 ① 이자 소득, ② 이익 배당 소득, ③ 재산의 임대 및 양도 소득, ④ 공업소유권과 기술 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⑤ 기술 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 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⑥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⑦ 이밖의 소득 등이 있다.

〈표 3〉 조세 감면 및 환급

구분	내용
외국 정부나 금융 조직이 북한에 차관 제공 또는 외국 은행이 북한 은행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대부	이자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
장려 부문의 기업 및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생산 부문 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 면세 및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 내에서 감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봉사 부문 기업이 10년 이상 기업 운영할 경우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1년간 면세 및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 내에서 감면
총투자액 6,000만 원 이상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하부 구조 건설 부문 기업	이윤 발생한 해로부터 4년간 면세 및 그 다음 3년간 50% 범위 내에서 감면
기업 이윤 재투자시 하부 구조 건설 부문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 전액 공제
기업 이윤 재투자시 하부 구조 건설 부문외의 기타 부문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 중 50% 공제

자료: 세금법 시행규정 제27~30조, 제35조.

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소득세를 분기별로 예정 납부하고 연간 결산에 의해 확정 납부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19조). 분기별 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20조). 이때 분기재정분기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 기관에 제출한다. 공제의 경우, 공제 납부자가 수익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득세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23조). 한편, 외국 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내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25조).

세금 감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가능한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부터 연속 계산한다.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33조). 세금을 감면받았더라도 외국 투자 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북한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북한에 1년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

〈표 4〉 개인소득세율

구분	내용
노동 보수	월 2,000 원까지 면세, 기타 <표 5>
배당 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 비결,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소득액의 20%
증여 소득	1만 원까지 면세, 기타 <표 6>
재산 판매 소득, 개인 기업 소득	소득액의 25%

〈표 5〉 노동 보수의 소득세율표

월 노동 보수액(원)	세율
2,001~3,000	2,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1~4,000	40 원 + 3,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001~5,000	90 원 + 4,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001~6,000	150 원 + 5,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6,001~7,000	220 원 + 6,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001~8,000	300 원 + 7,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1~9,000	390 원 + 8,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9,001~10,000	490 원 + 9,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0,001 이상	640 원 + 10,000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국민은 북한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36조).

개인 소득은 크게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 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 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재산 판매 소득, 증여 소득, 개인 기업 소득이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세금법 시행규정 제42조). ① 북한 정부와 외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② 북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 이자와 보험금·보험 보상금, ③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비거주자들간의 거래 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예금액의 이자.

〈표 6〉 증여세율

증여 소득(원)	세율(%)
1만 1 ~ 10만	2
10만 1 ~ 20만	4
20만 1 ~ 40만	6
40만 1 ~ 60만	8
60만 1 ~ 80만	10
80만 1 이상	12

재산세

외국인은 북한 내에 가지고 있는 건물·선박·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이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때로부터 20 일 내에 해당 재정 기관에 재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 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 가격⁴⁾은 국가 가격 재정 기관이 평가하고 공증 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세금법 시행규정 제 46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 또는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구입 또는 준공달로부터 5 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52조).

〈표 7〉 재산세율

구분	세율(%)
건물	등록값의 1
선박	등록값의 1.4
비행기	등록값의 1.4

상속세

북한 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북한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53조). 상속 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으는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 시장 가격으로 한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때로부터 30 개월 내에 상속세납부서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현물 재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현물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표 8〉 상속세율

상속소득(원)	세율
20만 1 ~ 35만	6
35만 1 ~ 60만	8
60만 1 ~ 80만	10
80만 1 ~ 120만	12
120만 1 ~ 250만	14
250만 1 ~ 400만	16
400만 1 ~ 800만	18
800만 1 ~ 2,000만	20
2,000만 1 ~ 5,000만	25
5,000만 1 이상	30

4) 이 가격이 재산세의 과세 대상액이 된다.

〈표 9〉 거래세율

구분	세율(%)	구분	세율(%)
• 생산 부문		- 전자 제품	4~14
- 전기 제품	4~10	- 가죽 및 털 제품	5~8
- 연료 제품	2~7	- 기타 공업 제품	4~15
- 광물 제품	4~5	- 식료품	3~20
- 금속 제품	4~7	- 술·담배 등 제한 상품	21~60
- 기계 및 설비	4~5	- 농산물	3~4
- 화학 제품	2~10	- 축산물	2~5
- 건재 제품	2~13	- 수산물	4~10
- 고무 제품	4~9	• 상업 부문	2
- 섬유 제품	1.5~10	• 봉사 부문	2~4
- 신발 제품	3~4		
- 일용 제품	3~15		

거래세

외국 투자 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 은 몇가지 경우에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법 시행규정 제59조). 그 경우로는 ① 생산 부문으로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 를 북한 내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② 상업 (무역 포함) 부문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 판매액, ③ 봉사 부문으로 운임, 대부 이자와 예금 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 사 수입금이다.

그런데 예외도 존재한다. 생산 부문의 기 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 또는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내에 판매하는 경우 거래 세를 면제한다(세금법 시행규정 제62조). 외

국 투자 은행이 북한 기업 또는 은행에 유리 한 조건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 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봉사 부문은 거래세 를 다른 지역보다 50% 감면한다(세금법 시 행규정 제64조).

지방세(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

〈표 10〉 도시경영세율

구분	세율
외국 투자 기업	기업 월 노임 총액의 1%
180 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 외국인	월수입의 1%

부해야 하는데,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자동차이용세가 있다.

먼저 도시경영세는 외국 투자 기업의 경우 기업의 월 노임 총액, 외국인의 경우 월 수입액을 과세 대상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 투자 기업과 면허증·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표 11〉 등록면허세액

구분	세액(원)
• 기업 등록	
- 설립 등록	- 건당 장려 부문 500 기타 기업 1,000
- 변경 등록	- 건당 40
- 취소 등록	- 건당 40
• 광업권 등록	
- 신규 등록	- 광구당 1,200
- 변경 등록	- 광구당 10
- 취소 등록	- 광구당 10
• 어업권 등록	
- 신규 등록	- 건당 1,000
- 변경 등록	- 건당 10
- 취소 등록	- 건당 10
• 면허증·자격증 발급	
- 자동차	- 건당 20
- 의사	- 건당 1,000
- 약제사	- 건당 500
- 회계사	- 건당 500

〈표 12〉 자동차이용세액

구분	세액(원)
• 버스	
- 12 석까지	- 대당/년 90
- 13~30 석	- 대당/년 100
- 31 석 이상	- 대당/년 120
• 승용차	• 대당/년 50
• 화물자동차	• 적재톤당/년 20
• 특수차	• 대당/년 50
• 자동차전차	• 대당/년 20

소유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 일 내에 해당 재정 기관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해서 60 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 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쟁국과의 조세감면제도 비교

북한은 투자 형태의 구분없이 모든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단일 세법을 적용하면서,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다소 유리한 소득세율과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세 감면 혜택에 있어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구

〈표 13〉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체계

	북한	중국	베트남
기업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지역: 25% 자유경제무역지대: 14% 장려 부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33%(지방세 3% 포함) 특구: 15% 장려 부문: 10% 	법인소득세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25%
기타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지역: 20% 자유경제무역지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20% 장려 부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가공구: 10% 우대 부문: 10%, 15%, 20%
기업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지대 제조업 및 장려 부문: 3년 면제후 2년간 50% 감면 자유지대 서비스업: 1년 면제후 2년간 50% 감면 자유지대 하부 구조 건설 총투자액 6,000만 원 이상: 4년 면제후 3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10년 이상 운영시 2년 면제후 3년간 50% 감면 농림어업: 기초 + 10년간 10~15% 감면 70% 수출 기업: 기초 + 50% 감면 계속 선진 기술 기업: 기초 + 3년 50% 감면 특구 SOC 15년 이상 기업: 5년 면제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1년 면제후 2년간 50% 감면 20% 소득세 적용 부문: 2년 면제, 3년간 50% 감면 15% 소득세 적용 부문: 2년 면제, 4년간 50% 감면 10% 소득세 적용 부문: 4년 면제, 4년간 50% 감면
개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000 원(약 930 달러) 이하 면세 초과 누진세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800 원(약 95 달러) 이하 면세 초과 누진세 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500만 동(약 500 달러) 이하 면세 초과 누진세 10~50%
기타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제: 차관·대부에 대한 이자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제: 삼자 기업 배당소득, 차관·대부에 대한 이자 소득 10% 적용: 특허 사용료·선진 기술 이전 소득 	규정 없음
재투자 혜택	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액의 50% 환급	5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40% 환급, 첨단 기업 및 수출 기업은 100% 환급	3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환급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지역: 생산용 수입 면세 자유경제무역지대: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수출용 수입 면세 특구: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수출용 수입 면제 수출 가공구: 무관세

주: 사업소득세율은 1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장려(우대)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베트남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개인소득세의 면세 범위와 초과 누진세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또 북한의 사업소득세는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은 물론 인도네시아(15~

30%), 말레이시아(40%), 태국(30~50%)에 비해 양호한 조건이다.

조세규정 상의 문제점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조세체계는 단일 법

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세체계가 단순하며 일목요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감이 있어, 실제 투자 기업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과는 정부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 과세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상사 주재원이나 파견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받는 등 이중 과세의 부담이 없다. 따라서 우리도 남북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루바삐 체결하여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거래세 세율표에서 부문별로 세율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품목에 대한 명확한 세율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 범위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자의에 따라 세율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북한은 조세상 원천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개인소득세는 북한에 180 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재산세

는 북한 내의 외국인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또 상속세는 북한 내의 재산 상속과 북한 거주 외국인의 북한밖 재산 상속에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불명확한 점은 북한 거주 외국인의 규정이다. 세금법 시행규정 제36조에서는 북한에 180 일 이상 체류한 경우 북한내 소득에 대해, 1 년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한 경우 북한밖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산세·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체류 또는 거주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북한 세무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금법」과 세금법 시행규정 상의 규정이 애매모호한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세금법」 제17조에서는 북한 내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세금법 시행규정 제36조의 경우 북한에 180 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세금법」 제14조에서는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 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재지의 재정 기관에 수익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법 시행규정 제25조에서는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공제 납부해야 하는지 애매하다.⁵⁾

다섯째, 조세율이나 조세 감면의 경우 대부분 규정 상으로는 북한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소득세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규정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우, 180 일 이상 체류 외국인의 소득 및 1 년 이상 체류 또는 거주 외국인의 북한박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 년 이상 5 년 이내 거주자로서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5 년 초과 거주자는 제6 년도부터 모든 국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베트남의 경우 연간 183 일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다.

여섯째, 외국인에 대해 과도한 조세규정

도 존재한다. 상속세 부분에서는 북한 거주 외국인이 북한 밖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에 대해 지나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 내의 불합리한 조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하면 「북한세금법」(제7조)에서 북한과 외국간에 체결한 세금협정이 북한의 세금법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경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5) 「세금법」에서는 신고납부제와 공제납부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방식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